

의안번호	제 14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광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2월 23일

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2. 23.

발 의 자 : 이광진, 박병진, 임순목,
강현삼, 김봉희, 임현경,
최병윤

1. 개정이유

환경정책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,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 확대(안 제3조)

1) 당연직(4명), 위촉직(6명) → 당연직(4명), 위촉직(11명)

2) 위원장 : 행정부지사 →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
나. 기타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: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2015. 1. 13. ~ 2015. 2. 3.까지

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”을 “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구성)”을 “(구성 및 임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로 하고”를 “호의 사람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연직위원”을 “당연직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직 위원 : 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
2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

3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
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,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간사와 서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제8조를 삭제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본 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위원</u> : 농정국장, 바이오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</p> <p>2. <u>위촉위원</u> : <u>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호의 사람</u> <u>중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</u> : <u>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</u>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</u> <u>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</u></p>

제5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
3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

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
3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,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민원을 야기할 때
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
등을 손상, 위원으로 부적당
하다고 인정될 때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도지사의
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
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다
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
의할 수 있다.

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
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
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
야 한다.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
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
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
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토의
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
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
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
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
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,
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<삭 제>

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
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제9조 · 제10조 (생략)

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9조 및 제10
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[환경정책기본법]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